

## 2021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1·2차 시험 병합실시)	시험시간
일반직 9급	시 설	일반토목	3명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60분
	시 설	건축	2명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60분

### 2. 시험방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홈페이지 공고 : 5. 24. ~ 6. 12. (20일간)</li><li>응시원서 접수 : 6. 14. ~ 6. 16. (3일간)</li></ul>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격요건 심사 ※거주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li></ul>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1차·2차 시험 병합실시)</li></ul>
면접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li></ul>

### 3. 응시자격 요건

- 연령 : 만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거주지 제한

- 2021년 제3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공고일 전일(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선군으로 되어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자격증 제한 : 1개 이상 소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장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장호

※ “기능사”의 경우, 자격증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필요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 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비고
2021.06.14.~06.16. (09:00 ~ 18:00)	필기시험	06. 21.(월)	06. 26.(토)	06. 30.(수)	
	면접시험	06. 30.(수)	07. 09.(금)	07. 14.(수)	

5. 응시원서 접수(접수시간 : 09:00 ~ 18:00)

가. 접수기간 : 2021. 06. 14.(월) ~ 06. 16.(수) [3일간]

나. 접수장소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행정팀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접수마감일(2021. 06. 16.)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라.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사진 2매, 정선수입증지 인증 포함)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 ※ 5,000원 상당 정선군수입증지 인증 - 정선군청 민원실 인증
-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 ③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④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
- 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6. 가산특전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직렬 해당사항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 선발예정인원 30% 초과할 수 없음
의사상자 등	-	* 선발인원이 9명 이하 해당사항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경우 가점 미적용, 모집 직렬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점 적용)

※ 의사상 대상자 가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

## 7. 기타 유의사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타지역 또는 타기관으로 진출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 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할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20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033-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작성서식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 력 서

가.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 ※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정선군 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정선군 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번호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p>
<p><input type="checkbox"/> 동의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2021. .</p> <p>성명 : (인)</p>	<p>2021. .</p> <p>성명 : (인)</p>

정선군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